

4-2-9 신규교원 임용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예수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임교원 (이하“교원”이라 한다)신규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정년트랙 신규임용 교원의 자격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최근 4년 이내 실적,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100% 이상인 자로 한다. 단, 간호학의 경우 해당전공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12.7.23., 2016.1.19., 2016.9.6., 2019.7.18., **2022.11.7.**>

② 비정년트랙 교원의 자격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14., 2007.11.19., 2008.11.21., 2012.7.23., 2016.1.19., 2016.9.6.>

1. 삭제 <2012.7.23.>

2. 삭제 <2012.7.23.>

3. 삭제 <2012.7.23.>

③ <신설 2007.11.19.> 삭제 <2012.7.23.>

제3조(채용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거쳐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 채용 및 수시채용 할 수 있다.

1. 해당전공분야에 탁월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2. 해당전공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인정되는 경우

3. 해당전공분야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4. 임상교원

5.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 <신설 2007.10.15.>

②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을 신규임용 할 경우에는 전직 대학에서의 직위보다 상 위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③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

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23., 2016.1.19.>

- ④ 제3항의 규정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 통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8.23.>

제4조(채용절차) ① 채용절차는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② 교원 수급계획은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학부 인력수요, 퇴직교원 예상, 학문분야의 여건 등을 고려하며, 학부의 충원요구를 반영하여 교무처장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6.12.14., 2019.7.18.>
-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지원 마감일 기준 15일 전부터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 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홈페이지, 교원 채용공고 전문 인터넷사이트,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23., 2019.7.18.>

제5조(심사위원 구성) ① 총장은 신규교원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 ② 전공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교무처장과 임용예정 전공관련 학부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부장이 추천(별지 제9호 서식)하는 전임교원과 외부인사 중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단, 심사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전공관련 외부인사로 한다.

제6조(전형방법) ① 신규임용 대상자 선발에 대한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서류심사
 2. 기초심사
 3. 전공심사
 4. 면접심사
- ② 심사에 관한 평가 배점 비율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비율 80%, 면접심사 비율 20%로 정한다.<개정 2022.11.7.>

제7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7.11.19, 2012.11.14, 2016.1.19., 2016.9.6., 2019.7.18. 2024.12.23.>

1. 교원임용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부
2. 자기소개서(연구, 교육, 봉사, 신앙 각 항목별) 1부
3.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부, 석사, 박사) 각 1부
4. 연구실적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5. 연구실적물

6. 논문 질 평가 대상 논문요지 1부
7. 향후 2년간 연구계획서 1부
8.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교원임용지원서상의 기재사항 일체)
9.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10. 세례증명서 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부
11. 학력 및 경력조회동의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13.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②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하에 교무처에서 실시하고,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 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 한다.

제8조(기초심사) ① 기초심사의 소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5조 2항에 의하여 위촉된 내부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전공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별지 4호, 별지 4-3호 서식) <개정 2007.11.19., 2012.7.23., 2012.11.14., 2016.1.19., 2016.9.6., 2019.7.18.>

1. 전공일치도
2. 학력
3. 논문의 양

② 1항에 따라 선정된 전공심사 대상자의 기초심사를 전공심사 당일 외부 심사위원들이 점검한다. <신설 2019.7.18.>

제9조(전공심사) 전공심사의 소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5조 2항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 위원들이 심사한다. (별지 제4호, 별지 4-3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7.11.19., 2012.7.23., 2012.11.14., 2016.1.19., 2016.9.6., 2019.7.18.>

1. 전공분야의 실무경력 평가
2. 논문의 질 평가
3. 강의능력 평가

제10조(전공심사 방법) ① 연구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원자의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는 지원자가 지정한 대표 연구실적물로 평가 한다. <개정 2019.7.18.>
2. 연구실적 산출방법은 단독연구는 100%, 2인이상 공동연구 주저자, 교신저자 $2/(n+2)$, 공동저자는 $1/(n+2)$ 로 산출하며, 15명이상일 경우 $n=15$ 로 처리한다. 단, SCI, SCOPUS급 이상 연구실적은 2배로 인정 한다. <개정 2012.11.14, 2016.1.19, 2016.9.6.>
3. 연구 실적물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4년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연구실적은 SCI, SCOPUS급 이상,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게재 실적만 인정한다. <개정 2012.7.23, 2016.1.19, 2016.9.6.>

4. 저.역서는 ISBN이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발표논문, 개정 증보판, 저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들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9>
5. <개정 2007.11.19.>, 삭제 <2012.7.23>
6. 저.역서의 산정기준은 단독저술 실적은 100%이며, 공동저술 실적은 $1/N$, 연구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는 $N=10$ 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6.1.19>
- ② 강의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강의능력평가는 신규교원채용심사위원들의 입석하에 공개 강의를 실시하며, 공개강의에는 심사위원 외에 참관인을 참석케 할 수 있다.
 2. 강의능력 평가의 소 영역은 강의내용, 강의능력, 강의태도, 강의방법, 교수자료 활용으로 한다.
 3. 강의능력 평가 점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강의능력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강의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면접심사) ① 면접 심사는 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이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7.23., 2016.1.19.>

② 면접심사 평가의 소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지 제7호 서식)

1. 교육철학
2. 신앙생활
3. 학교발전기여 가능성
4. 교육자적 인품
5. 특기사항

③ 면접심사 평가 점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 ① 최종선발 예정자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②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강의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자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3. 연령순(연소자)

③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④ 총장은 최종 평정한 점수 100점(100점으로 환산 시) 중 80점미만의 자로 평가된 채용후보자와 강의능력 평가점수 또는 면접 평가점수가 해당 영역 점수의 80% 미

만으로 평가된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당연 부적격 처리하여야 하며, 적격한 자로 판정된 채용후보자는 그 명단과 관계 서류를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7.>

⑤ 총장은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예정자를 확정한다. <신설 2019.7.18.>

⑥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제13조(임용제청) ① 총장은 임용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사장에게 임용제청 한다. <개정 2006.12.14.>

② 총장은 신규임용대상자에게 이사회의 결과 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용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

③ 교원의 신규임용이 확정된 자는 관할청의 임용보고 서식에 의한 서류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4., 2008.11.21., 2019.7.18.>

제14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불비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9., 2019.7.18. 2022.11.7.>

교원임용지원서

접수번호 :

초빙구분 (해당란에 √표)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사 진 (4×5cm) 최신 3개월 이내			
지원분야	학부							
	분야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연령	만세			
주소	주택	(-)						
	직장	(-)						
전화	주택		직장		E-mail			
	휴대전화		FAX					
학력	수학구분	출신학교		학과	전공	학위 종별	학위취득 (졸업)일	비고
	고교	고등학교						
	학사	대학교						
	석사	대학	대학원					
	박사	대학	대학원					
학위논문 제목	석사							
	박사							
본인은 귀 대학교 학년도 학기 교원공채 임용에 응모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1. 교육 경력

기관명	직 명	주당시간	담당과목	기 간	환산경력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재직기간 및 환산경력				년 월 일	년 월 일

- 註)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과 동 규정 제 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인정 한 경력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교육 불인정), 예수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2를 참조
2. 재직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당 담당시간은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에 한합니다.
4. 환산경력은 예수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2를 참조하여 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재된 교육경력에는 반드시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사용란이 부족할 경우 줄을 늘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작성 후 註)는 삭제하여 주십시오.

2. 연구 경력

기 관 명	직 위	연구수행 사항	재 직 기 간	환산경력	비 고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재직기간 및 환산경력			년 월 일	년 월 일	

- 註)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인정한 연구 경력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2를 참조)
2. 재직기간은 년,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환산경력은 예수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2를 참조하여 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재된 연구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란이 부족할 경우 줄을 늘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작성 후 註)는 삭제하여 주십시오.

3. 산업체 및 기타 경력

기 관 명	직 위	담당직무	재 직 기 간	환산경력	비 고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재직기간 및 환산경력			년 월 일	년 월 일	

註)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인정한 연구경력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2를 참조)

가. 민간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①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②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에 규정에 의거 개설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의 근무경력

2. 재직기간은 년,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환산경력은 예수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2를 참조하여 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재된 기타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란이 부족할 경우 줄을 늘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작성 후 註)는 삭제하여 주십시오.

4. 자격, 면허, 특허 및 지적소유권

종 별	취 득 년 월 일	시 행 청	비 고

註) 1. 종별란은 채용분야와 관련된 자격, 면허, 특허 및 지적소유권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학부 : 간호사면허증 필수,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필수)

2.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원본제시)

3. 사용란이 부족할 경우 줄을 늘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후 註)는 삭제하여 주십시오.

- 주의 : 1. 연구실적 평가표는 지원자가 작성해서 제출한다.
2. 연구실적 환산율은 신규교원임용세칙 제10조에 의거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고란에는 논문의 질 평가를 위해 희망하는 연구목록에 하나만 “V”표 하시오.
4. 확인자란은 기입하지 마시오.

(별지 제 3호 서식) <개정 2012.11.14., 2016.1.19., 2019.7.18.>

기초심사표(서류심사표)

임용구분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학 부		성 명

제출 서류 목록 (※ 서류 접수시 이 장을 표지로 하여 아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서류확인 결과
1	교원임용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부	
2	자기소개서 (연구, 교육, 봉사, 기독교신앙 각 항목별)	1부	
3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부, 석사, 박사)	각 1부	
4	연구실적목록 (별지 제2호 서식)	1부	비정년트랙제외
5	연구실적물	각 1부	
6	논문 질 평가 대상 논문요지	1부	비정년트랙제외
7	향후 2년간 연구계획서	1부	비정년트랙제외
8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10	세례증명서	1부	
11	학력 및 경력조회동의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13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1. 상기 서류를 확인 한 결과 다음과 같다. (해당 란에 ○표)

합 격	불합격

2. 지원자에게는 서류심사 결과를 e-mail 및 전화로 통보하기로 하다.

년 월 일

심사자 :

인
인

확인자 : 교무처장

인

(별지 제 4호 서식) <개정 2012.11.14., 2016.1.19., 2019.7.18. 2022.11.7.>

정년트랙 전임교원 기초 및 전공 심사표

임용구분		정년트랙 전임교원			
학 부				성 명	
구분	심사내용		배점	평가점수	평가기준
기초 심사	모집분야 전공일치도 (20)	석사·박사 세부전공분야	10		· 일치 10점 · 부분일치 5점
		학사·석사·박사 학 위	10		· 일치 10점 · 부분일치(2) 7점 · 부분일치(1) 5점
	논문의 양		15		· 300% 이상 15점 · 250% 이상 13점 · 200% 이상 11점 · 150% 이상 9점 · 100% 이상 7점
	전공분야의 실무경력		10		· 5년 이상 10점 · 4년 이상 9점 · 3년 이상 8점
전공 심사	논문의 질		15		
	강의 능력		20		
총 점			80점		

* 논문의 질, 강의능력 평가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 4-1호 서식) <개정 2012.7.23, 2012.11.14, 삭제 2016.9.6.>

(별지 제 4-2호 서식) <신설 2007.11.19, 삭제 2012.7.23.>

(별지 제 4-3호 서식) <신설 2007.11.19, 명칭변경 2012.7.23, 개정 2012.11.14>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외국어전담교원) 신규채용 심사표

임용구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학 부		성 명		

구분	심사내용	배점	평가점수	평가기준
기초 심사	전공일치도	10		· 일치 10점 · 불일치 8점
	학력(학위)	15		· 석사이상 15점 · 학사 13점
	국제교사 자격증	10		· 유 10점 · 무 8점
	국외거주기간 (해당 외국어 권역 국가 거주기간만 인정)	15		· 20년 이상 15점 · 15년 이상 13점 · 15년 미만 11점
전공 심사	강의경력	20		· 4년 이상 20점 · 2년 이상 18점 · 2년 미만 16점
총 점		70점		

* 강의능력 평가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9.6. 2022.11.7.>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11.7.>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11.7.>

신규 교원채용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채용후보자	평가점수 (100점)		총점	비 고
		기초.전공 심사 점수 (80점)	면접점수 (20점)		

신규교원 임용세칙 제12조 3항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규교원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전공영역 심사위원 추천서

성 명	소 속	직 급	세부전공	비 고

상기기자를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우리대학교 ()학부(과), 전공 ()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전공영역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학 부 장 : (인)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 학부 인사위원회 회의록